

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				
성 명		주민등록 번 호		사 진 (3×4)
주 소				
등록기준지				
전 화		H.P		
학생성명	학년 반 성명			
자격확인	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
	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
	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.			예, 아니요
경 력	사회경력,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		직 업	
입후보 소 건				
<p>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3기 원광보건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후보자 성 명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원광보건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

※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106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.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원광보건고등학교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 조회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정보	2	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생년월일 :
전화번호 :

후보자 사퇴서

1. 위원구분: (학부모, 교원) 위원

2. 후보자 성명:

3. 생년월일:

4. 사퇴이유:

본인은 2024년 3월 14일부터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(개인사정으로 인하여)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사퇴자: 후보자 (인)

원광보건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

위원장 귀하

결 재	간 사	선출관리위원장